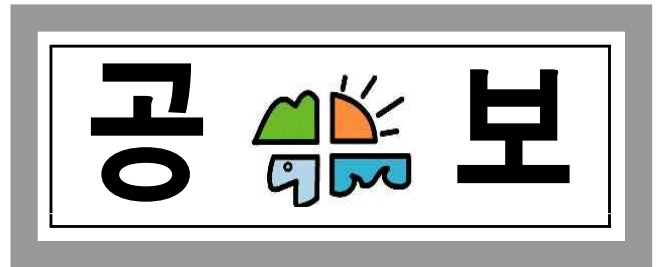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691호 2012년 4월 6일(금)

고 시

○ 어장 정화·정비 실시계획 고시..... 2

공 고

○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계획 공람·공고..... 6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어장 정화 · 정비 실시계획 고시

어장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 · 효율적 추진을 위한 『2012년 어장 정화 · 정비 실시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 0 1 2 년 4 월 6 일

속 초 시 장

2012년 어장 정화 · 정비 실시계획 고시 : “별첨”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.

2012년 어장 정화 · 정비 실시계획

1. 실시계획의 개요

□ 목 적

- 본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2012년도 어장정화 · 정비 집행지침 및 어업여건 · 해역특성 등을 고려한 강원도지사의 어장정화 · 정비 세부지침에 따라 관내 어장에 대한 어장정화 ·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서
- 어장정화 ·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□ 근 거

-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
 - 어장 정화 · 정비 집행지침(농림수산식품부)
 - 어장정화 · 정비 세부지침(강원도)

□ 실시(추진)방향

-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통한 해역별 체계적 사업 추진
- 오염해역 및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
- 국고 보조사업 중 어장정화 · 정비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
-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 · 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시설물 재배치
-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을 확행

□ 실시대상 어장

-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
- 어장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제3항제3호(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육상종묘생산어업 제외)에 의한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
-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 주변의 공유수면

2. 어장개발 현황

- 총 개 발 : 16건 / 613.6ha
 - 면허어업 : 15건 / 608.6ha
 - 허가어업 : 1건 / 5ha

○ 어업별 세부내역

(단위 : ha)

구 분	합 계	면 허 어 업					허가어업	
		소 계	마 을	협 동	복 합	패 류	소 계	해상종묘
건 수	16	15	5	3	2	5	1	1
면 적	613.6	608.6	490.56	61.54	18.50	38.00	5.00	5.00

3. 세부 실시계획

가. 어장정화 · 정비의 대상어장 및 기간

○ 어장 정화 · 정비의 대상 어장

구 분	면허 번호	어 업 권 자		위 치	면 적
		주 소	성 명		
마을어업	2	속초시 장사동	장사동어촌계	장사동 지선	220.00ha
	6	속초시 대포동	내물치어촌계	내물치 지선	45.82ha

○ 정비기간 : 2012. 4 ~ 12월

나. 어장 정화 · 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

○ 정화대상 : 수중 오 · 폐물 및 폐어망, 어구류

○ 정화방법

-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어장 청소 실시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 한 후,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함.
-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

다. 행정사항

- 심의 의결사항 고시 후 추진사항 강원도 보고 및 어업인 홍보
- 어장청소 실시계획서 제출 :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호 서식
- 어장 청소 후 청소사진과 폐기물 처리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

※ 어장 청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

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계획 공람 · 공고

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에 따라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람 · 공고합니다.

2012. 04. 06.

속 초 시 장

1. 사 업 명 :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교동지구 내 소로3-2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2. 사업내용 : B = 6M, L = 96M
3. 사업기간 : 2012년 07월 ~ 2012년 08월(※ 2개월 예정)
4. 열람기간 : 공고(신문)게재일로부터 14일간
5. 보상시기 : 2012년 05월 01일 ~ 2012년 05월 31일(※ 1개월 예정)
6. 보상방법 :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(보상액의 산정)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함.
7. 보상절차 : 市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제출 후, 보상금 수령
8. 토지 및 지장물조서 열람장소 :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주택팀
9. 의견제출 : 이 공고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은 2012. 04.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 - 나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 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주택팀(☎033-639-2773)으로 문의바랍니다.

